

[일련번호 : 3]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관리·감독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정산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따르면, 정산 결과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반환토록 조치하고,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며,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약정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2022년 ○○○○○○○○ 양천구협의회’ 보조금 정산 시 각 동별 위원회 통장에서는 잔액과 이자 총 17,102원 남아있었음에도 실적보고서 상 통장잔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시정·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지 않아 관리·감독에 소홀하였다.

[표] ○○○○○○○○ 양천구협의회 동별 위원회 계좌 잔액 내역

(단위: 원)

동명	‘22.12.31. 통장별 잔금	‘23.12.31. 통장별 잔금	‘24.12.31. 통장별 잔금	지적사항	
	131	388	189	- 동별 위원회 통장 내 잔액이 연도별로 다수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는 매년 실적보고서상 통장 잔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있음.	
	658	978	21,265		
	2,905	606	3,119		
	228	361	755		
	4,543	4,713	112		
	1,102	1,375	609		
	202	307	116		
	1,310	382	7,099		
	2,158	2,311	242		
	110	31	52		
	160	550	177		
	0	8,071	1,010,113		
	156	282	195		
	1,111	296	0		
	2,103	8,589	191		
	0	239	140		
	93	299	93		
	132	308	159		
총계	17,102 (미반납)	30,086 (반납)	1,044,626 (반납)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실적보고서 제출 시 동별 위원회 통장잔액 확인 및 반납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